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 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6항제1호의2 중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를 “통관감시장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국경관리 장비”를 “통관감시장비”로 한다.

제12조제14항제1호 중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을 “통관감시장비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를 “통신장비”로 한다.

3. 통관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

제13조제1항 중 “제12항제4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를 “제1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12조제14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제15조제1항 중 “제1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2항제4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2조제11항·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를 “제12조제11항·제13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제12항제4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항제1호·제3호”를 “제14항제1호·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를 “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제18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1의 인천공항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중구”를 “영종구”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세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	---------------	---

별표 1의 안산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을 “한정한다)·서해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연희동·검암동에 한정한다)·검단구[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으로, 같은 란 중 “·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을 “·왕길동·시천동·백석동”으로 하며, 같은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광양세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
목포세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여수세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별표 3의 안산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

곡동·오류동”을 “한정한다)·서해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연희동·검암동에 한정한다)·검단구[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으로, 같은 란 중 “·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을 “·왕길동·시천동·백석동”으로 하며,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포세관	완도지원 센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

별표 8 중 공업서기보 “7”을 “8”로,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공업서기보 “7”을 “8”로,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 ⑤ (생략)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장비투자금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u>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u>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1의2. <u>통관감시장비</u> ----- -----
2. <u>관세국경관리 장비</u> 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2. <u>통관감시장비</u>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⑬ (생략)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u>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u> 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u>통관감시장비의 관리</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u>	3. <u>통관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4. <u>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u>	4. <u>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u>

유지·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 ③⑩ (생략)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④ (생략)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제18호·제19호,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②⑤ (생략)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⑨ (생략)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제12조제14항 각 호(제2호는

항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

⑮ ~ ③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14항제1호·제3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3항-----
-----.

⑥ ~ ②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4항 제1호 및 제3

<u>제외한다)의 사항</u>	<u>호의 사항</u>
<u>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u> ⑪ ~ ⑳ (생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㉒ (생략)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㉗ (생략)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㉖ (생략)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같은 조 제13항 각	<u><삭 제></u> ⑪ ~ ㉓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4항제1호·제3호----- -----. ⑫ ~ ㉒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4항제1호·제3호-----. ⑫ ~ ㉗ (현행과 같음) ⑧ ----- 제12조제11항·제13항----- ----- ----.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4항제1호·제3호-----. ⑫ ~ ㉖ (현행과 같음) ⑦ ----- ----- 각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
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의 사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u>제6호까지</u>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⑦ (생략)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제15호, <u>같은 조 제14항제4호</u>, 같은 조 제19	<u>항을 분장한다.</u>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 ----- ----- ----- ----- ---- <u>제6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같은</u>----- -----
---	---

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

③ -----

----- 제14
항제1호·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생략)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략)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항제2호-----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

항을 분장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7</u>		8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4</u>		3	-1
	.		.		.	
	.		.		.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7</u>		8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4</u>		3	-1	
	.		.		.		
	.		.		.		